

**제2708호**  
**2020. 1. 31.**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0-7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2

◎ 공 시

제2020-63호 :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9

◎ 공 고

제2020-72호 :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1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0-77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구성)

- (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2)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부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및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밖에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제8조(회의)

-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회의시작
- (2)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음

다. 제9조(심사-의결)

- 「별표1」 심사기준표에 의해 채점하며,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일 경우 의결함.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중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전화: 3396-5365, FAX: 3396-8732, E-mail: jungye69@junggu.seoul.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1부. 끝.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424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 5.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의결
-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던 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 및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항목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배 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p>□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gt;</p> <p>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자정취소,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li> <li>△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일인 경우 : 감점 15점</li> <li>△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li> <li>△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p>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li> <li>△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li> </ul> </div>	20점
	<p>□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 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p> <p>(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li> <li>△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li> <li>△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li> </ul> </div>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li> <li>□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의료 등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전문성</li> <li>□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li> </ul>	10점

항목	심사자료 : 인력현황,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현황 등	배 점
<b>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b>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li> <li>□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 적정여부</li> <li>□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li> <li>□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휴가) 마련 여부</li> <li>□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ex.공개모집 여부 등)</li> <li>□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li> <li>□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ex.연1회이상) 예방 교육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li> <li>□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li> <li>□ 요양 인력 교육계획 (노인인권,노인학대,성폭력예방 등)</li> </ul>	20점
<b>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b>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li> <li>□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li> <li>□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li> <li>□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li> <li>□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li> </ul>	15점
<b>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b>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li> <li>□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여부 (ex.연1회이상 등)</li> <li>□ 서비스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li> </ul>	15점
<b>합 계</b>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공 시

공시 제2020-63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 고
① 일반명단 A4용지 제공 : A4용지 1매 기준 68원  ② 라벨용명단 제공 : 라벨용지 1매 기준 241원	전산자료 복사본 CD 제공 : (490원X디스크 개수)+(35원X면수)	

## 공 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72호

##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중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31.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 부의안건 :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구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연락처)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과 (3396-4911)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정부과 (3396-4551)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지원조례 제정안	교육아동청소년과 (3396-4661)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치수과 (3396-6141)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치수과 (3396-6141)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3396-5141)
계획안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3396-5001)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안	동정부과 (3396-4551)
동의안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통시장과 (3396-5041)
의견청취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심재생과 (3396-5771)